

(별첨6)

## “비수도권 인재” 및 “이전지역 인재” 판단 기준

- ※ 아래 제시되는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국토부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본인이 아래의 기준으로 비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채용홈페이지 Q&A게시판을 이용하여 채용담당자의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실 것
- ※ 아래 참고내용이 채용공고 후 법 개정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
- ※ 아울러 입사지원서에서 “대학교 졸업예정”을 선택하려면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'22.9.13.) 기준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가능해야 하므로, 반드시 학교 행정실 등에 문의 후 선택 (발급 불가 시 “재학” 선택)

① (비수도권 인재) 입사지원서의 “지역구분”에 “비수도권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(대학원 이상은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·해외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(예정), 재학(휴학) 또는 중퇴한 자이어야 함

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)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\*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 - \* 예 :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### ○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(예시)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○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② (이전지역 인재) 부산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(대학원 제외)를 **최종적으로\*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\*\*인 자**를 의미

\* 부산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한 자는 제외

\*\*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**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** 하고,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
○ 이전지역(부산) 학교의 범위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 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상의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\*

※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※ 이전지역(여기서의 이전지역은 부산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모두 해당됨)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(부산)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
(예) 부산대 양산캠퍼스(경남)는 LH 등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“이전지역”  
이므로 본교가 부산에 있더라도 공사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(부산) 소재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이전지역(부산)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○ 이전지역(부산) 학교 제외 대상

-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○ 이전지역(부산) 인재의 범위

- “이전지역 학교의 범위”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
-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(부산) 학교인 자
  -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 -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 -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 -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 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학교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
  - 이전지역(부산) 외 →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: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  - 이전지역(부산) →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: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## <판단 예시>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- ※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